

2023 / vol. 27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Q&A

2023. 12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FOODCERTI*  
*ISSUE REPORT*

foodcerti.or.kr  
1588-0559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 CONTENTS

1 / 머리말

2 / 주요 질의응답

3 / 맺음말

## 머리말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을 근거로 인도네시아 수입·유통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음료의 경우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분야 업무협력을 체결하여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내 할랄인증기관(2개소)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상호인정 협정은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인증로고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위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 對인니 농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 BPJPH 청장을 비롯한 담당자를 초청하여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나, 참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시간의 부족함이 있었고, 기업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리포트를 제작하였다.

본 리포트는 기업설명회 및 한-인니 할랄인증기관 간 간담회 등에서 실제 질의한 내용과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본 리포트가 對인니 농식품 수출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주요 질의응답

질문 1. 할랄인증이 없다면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금지되는가?  
또한 비할랄 제품으로 표시하면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한가?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법에 따라 할랄인증은 반드시 요구됨. 따라서 할랄인증이 없다면 수출이 불가능함. 한편, 비할랄 제품도 여전히 수출이 가능함. 다만, 반드시 비할랄 제품 표시를 해야 함. 또한 술, 담배 등 그 자체로 하람인 것은 비할랄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은 할랄/비할랄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거나, 명백한 하람인 것(표시 필요없음)이 가능함.

질문 2. 그렇다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인증 없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는 판매가 불가능한가?

- 불가능함.

해당일 이후에는 할랄/비할랄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될 예정임. BPJPH에서는 할랄제품보장법에 따라 시행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 또한 BPJPH는 해당일 이후 할랄/비할랄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한 3단계 경고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서면경고(1단계)부터 제품철회(3단계)까지 고려하고 있음.

**질문 3. 현재 MUI 인증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BPJPH 인증로고로 변경해야 하는가?**

○ 변경해야 함. 다만, 유예기간 있음.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는 인증제품의 경우 BPJPH 인증로고가 반드시 있어야 함. 다만, 2026년 2월까지 MUI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기간 유예의 취지는 해당일까지 최대한 포장 재고를 소진하고 기간 내 인니 식약처(BPOM)에 등록하라는 기업 입장을 고려한 배려의 의미이며 그때까지 MUI 인증로고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님.

**질문 4. 인도네시아 BPJPH 인증과 한국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할랄인증을 확보한다는 것에서 차이는 없음. 다만, 국내 할랄인증기관(KMF, KHA)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접근성 부분에서 유리함.

BPJPH는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이 원재료와 라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BPJPH의 입장임. 실제 심사는 LPH (할랄심사기관, 국내의 경우 대부분 LPPOM MUI)에서 진행하며, 동 기관의 정책에 따라 중간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심사관 체재비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함. 특히 BPJPH는 연 1~2회의 중간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나, LPH에서 이를 실제 수행 가능할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질문 5. 인도네시아 BPJPH 인증과 국내 할랄인증기관 인증에 대한 현지 소비자 선호도 차이는 어떠한가?**

- 소비자마다 기호에 따라 다름. 단, 아래의 이유로 선호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BPJPH는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제품에 할랄인증 로고를 표시 할 때, BPJPH 인증로고와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즉, 두 개의 로고(국내 인증로고 + BPJPH 인증 로고)를 함께 사용해야 함. 또한, 두 개의 인증로고 중 하나의 인증로고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BPJPH 인증로고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현지 소비자 선호도 차이에 대한 우려는 낮아질 것이라 판단됨.

**질문 6. 인도네시아 BPJPH와 한국 할랄인증기관 2개소가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시기는 언제인가?**

- 2023년 11월 18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의 (재)한국이슬람교(KMF) 및 한국할랄인증원(KHA)는 BPJPH와 MRA에 서명하였음. MRA 내용 중 상호인정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질문 7. 할랄인증로고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수출이 가능한가?**

- 미정임. BPJPH는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단, 관련 규정은 인니 식약처(BPOM)에서 관할하고 있음. 현재 까지 BPOM에서 관련 규정을 발표하지 않음.

질문 8. 한국의 수출기업이 KMF, KHA 이외의 BPJPH와 상호 인정이 되어 있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도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한가?

○ 불가능함.

BPJPH는 범국가적인 인증은 인정하지 않음. 예를 들어 한국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공장이 한국에 있어야 함. 한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 공장이 있다면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불가능함.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의견)

BPJPH는 할랄인증 받은 기업에서 이슈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제조공장이 같은 국가 내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업설명회에서 BPJPH는 말레이시아 JAKIM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의 제품은 인도네시아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인증기관과 제조공장의 소재국이 다르기 때문), JAKIM의 할랄인증 구조가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OEM 형태로 한국에 공장이 있는 경우임을 설명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이유는 앞서 설명한 동일한 국가 내에 인증기관과 부여받은 법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찾고 있으며, 확인되는 즉시 온/오프라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게 전파할 예정임.

질문 9. 기존 할랄인증 없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제품일 경우, 국내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을 받으면 BPOM 에 새로 등록해야 하는가?

○ 등록해야 함.

할랄인증을 취득한 것은 제품에 대한 제출할 서류의 변화가 있다는 말이므로 새로 등록해야 함. 그리고 BPOM 등록은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담당해야 함.



## 맺음말

인도네시아 할랄식품 시장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이 가장 많이 도전하고 있는 新식품수출시장 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이 역경으로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조차 아직 명확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할랄식품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앞으로도 국내 식품수출업체들이 반드시 진출해야 할 시장이다. 따라서 비록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규정들이 미진한 상황이지만, 민관이 한마음으로 이를 대응 및 타개하고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역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할랄식품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할랄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며 본 보고서를 마친다.

FOODCERTI 이슈리포트 (Vol. 27)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Q&A

---

기획 및 작성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식품연구원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1899-0559

자료문의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이현성 (063)219-9382

자료게재 [www.foodcerti.or.kr](http://www.foodcerti.or.kr)

---

\* 본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가 작성한 보고서임을 밝혀야 함